2020년도 제17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I. 회의 개요

o 일 자 : 2020. 8. 18.(화요일)

o 방 법 : 온라인심의

o 참 석 자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

- 심의위원 : 최승수 위원(분과위원장), 박재화 위원, 위정현 위원, 홍지만 위원

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〈**의결안건**〉 ※ 안건 검토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

·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Ⅱ. 회의내용 및 결과

- o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 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 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54건(안건번호 제2020-95446호~95545호)
 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 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

Ⅲ. 주요내용

- A 위원: 안건번호 제2020-95446호~95545호{'□□□□' 사이트의 '(음악)취기를 빌려 (취향저격 그녀 X 산들) (가수: 산들)' 등 154건의 게시물}는 불법 복제한 음악저작물, 영상저작물(방송, 영화)을 웹하드 등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. 다만,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.
- B 위원 : 본 심의의 대상인 제2020-95446호~제2020-95545호 100개 안 건은 최신 영화,방송,음악 저작물 154개를 불법으로 복사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중에 전송하는 게시물에 대한 것이다. 온라인 서비스 제 공자를 통해 공중에 전송한 사실이 제출 자료에 의해 확인되며, 이와 같은 사실은 저작물의 공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위원회에서 저작권법에 따라 시정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.
- C 위원: 안건번호 제2020-95446호~95545호는 불법 복제한 음악저작물, 영상저작물(방송, 영화)을 웹하드 등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공중의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. 다만,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
- D 위원: 안건번호 제2020-95446호~95545호는 불법 복제한 음악, 영 상물 등을 인터넷을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경고 가결 의견임. 단, 기 삭제되거나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 고의 시정 권고 의견임.

2020년 제175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
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0. 8. 27.

분과위원장 최승수

위원 박재화

위원 위정현

위원 홍지만